

인천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63119 판결 [가입 계약금 반환 청구]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6311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소56499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4. 3. 13.

판결 선고 2024. 4. 2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소564991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30.부터 2024. 4.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이름으로 증권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본부장인 D의 권유로 2021. 8. 1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VVIP특별반'-C 계약(계약기간: 2021. 8. 18. ~ 2022. 8. 18.,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8. 18. 피고에게 이용료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는 가입비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VIP 계약 가입비 특약)

본 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의하여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본 상품 가입 후 아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투자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가입비 반환의 혜택을 부여한다.

1. 본 상품 가입 후 (6)개월 이후, 회사가 동법 제101조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수익률이 (195)% 미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항의 합산수익률은 회사가 본 상품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매수 추천 종목 중 매도 추천 정보 제공이 완료된 종목으로써 해당 정보에 의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각 수익들을 산술적 방법에 의하여 합산하여 판단한다.

라.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는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추천 주식종목, 매수가격, 매도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마. 원고는 2022. 2. 18. 합산수익률이 195%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특약 제4조에 따른 가입비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합산수익률이 195%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가입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항이 보유종목의 손실은 제외하고 매도완료 종목의 수익률만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합산수익률 산정방식은 부당하고, 피고는 위 계약서 제4조를 악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주식리딩방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가입비는 반환되어야 한다(불공정약관 내지 반사회질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주장으로 선행한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 추천 종목의 합산수익률은 195%에 미달한다. 즉 피고는 2021. 8. 18. D 개인카톡으로 추천 후 다음날 정식 정보채널로 동일 종목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중복하여 합산수익률을 산정하였다. 위 중복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추천된 종목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합산수익률은 195%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가입비는 반환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매도완료 종목 수익률만 합산하는 방식으로 합산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달리 이 사건 계약에 무효사유가 없다.

2) 피고 매수 추천 종목 중 매도 추천 정보 제공이 완료된 종목의 합산수익률은 195%를 상회하므로 특약 제4조에 의한 가입비 반환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특약사항으로 종목 합산수익률 195% 미달 시 가입비를 환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추천 주식종목,

매수가격, 매도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이 사건 계약은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인 점, 이 사건 계약의 기간, 이용대금의 금액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특정인에게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계약으로서 피고는 이러한 투자자문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법인)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4조에서 가입비 반환에 관한 특약으로 피고가 195%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가입비를 환불해 주기로 한 것은 투자자문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또한 달리 이 사건 계약에서 주식투자가 개인책임으로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한 문언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강행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5조1)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이고, 원고로서는 위 약정이 무효인 것을 알았다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137조2)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갑 제15호증으로 원고의 고소로 피고 관계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서증을 제출하였는바, 원고의 계약 무효 주장에는 자본시장법의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가입비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2. 3.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4.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³⁾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계약무효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판사윤정인

판사유성혜

판사서희경

1)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제1호),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 특히 금융위원회 인가 또는 등록 여부를 떠나 투자자문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행하는 경우 이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함으로써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일정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참조).

2)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3)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2013. 4. 11. 선고 2012다106713 판결,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등 참조).